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6일, 윤준병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1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1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의원)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보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아님을 확인받게 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고, 지급보류 처분 이후 불법개설 기관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는 법조항의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¹⁾을 선고하고, 현행

1) 2024.6.27. 2021헌가19

법 조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음(2021헌가19, 2024.6.27.선고).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 사실이 수사결과로 확인되었다면, 추후 불기소 처분 등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처분청은 이를 지급보류처분의 직권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뿐 취소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급보류처분이 철회되는 데 그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보류된 의료급여비용 및 이에 대하여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연 3.5%)에 따른 이자만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생각건대, 지급보류처분이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른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후 일련의 관련 절차 진행에 따라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명시적 규율이 필요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대하여 잠정적 지급보류상태를 해제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